

2022년도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추경예산안 개요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

나. 의안번호 : 제21호

다. 제출일자 : 2022년 7월 13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7월 14일

마. 추경예산 편성 사유

- 정부 2차 추경에 대한 매칭 시비확보 및 결산에 따른 정리추경 등을 위해 2022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하는 것임

2. 추경예산안 총괄

□ 세입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19억 78백만원 대비 2,351억 97백만원(11.7%)이 증가한 2조 2,371억 75백만원으로 편성됨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8,409억 78백만원 대비 2,351억 97백만원(12.8%) 증가한 2조 761억 75백만원으로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원으로 예산변동 없음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10억원으로 예산변동 없음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 산 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237,175	2,001,978	235,197	11.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76,175	1,840,978	235,197	12.8
교통사업특별회계	30,000	30,000	0	0.0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31,000	131,000	0	0.0

□ 세출예산안

- 2022년도 제2회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조 8,614억 53백만원 대비 2,860억 76백만원(15.4%)이 증가한 2조 1,475억 29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862억 1백만원 대비 2,368억 54백만원 (48.7%)이 증가한 7,230억 55백만원으로 편성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조 2,247억 66백만원 대비 405억 7백만원(3.3%)이 증가한 1조 2,652억 73백만원으로 편성
 -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4억 99백만원 대비 87억 15백만원(49.8%)이 증가한 262억 14백만원으로 편성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29억 87백만원으로 예산변동 없음

※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회 계	예 산 액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률(%)
계	2,147,529	1,861,453	286,076	15.4
일 반 회 계	723,055	486,201	236,854	48.7
특 별 회 계	1,424,474	1,375,252	49,222	3.6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1,265,273	1,224,766	40,507	3.3
교 통 사 업 특 별 회 계	26,214	17,499	8,715	49.8
광 역 교 통 시 설 특 별 회 계	132,987	132,987	0	0.0

Ⅱ. 회계별 세입 · 세출예산안

1. 일반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기정예산 4,862억 1백만원 대비 2,368억 54백만원(48.7%)이 증가한 7,230억 5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 내역 〉 1건, 2,368억 54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2,368억 54백만원

〈 감액 내역 〉 없음

※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723,055	486,201	236,854	48.7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723,055	486,201	236,854	48.7

2.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기정예산 1조 8,409억 78백만원 대비 2,351억 97백만원(12.8%)이 증가한 2조 761억 7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 내역 〉 2건, 2,586억 60백만원

- 기타회계전입금 2,368억 54백만원
- 순세계잉여금 218억 6백만원

〈 감액 내역 〉 3건, 234억 63백만원

-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163억원
- 예탁금 이자수입 1억 63백만원
- 부담금 70억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A-B)	증감률(%)
총 계	2,076,175	1,840,978	235,197	12.8
기 타 회 계 전 입 금	723,055	486,201	236,854	48.7
순 세 계 잉 여 금	21,806	0	21,806	100.0
예 탁 금 원 금 회 수 수 입	0	16,300	△16,300	△100.0
예 탁 금 이 자 수 입	0	163	△163	△100.0
부 담 금	0	7,000	△7,000	△100.0

나. 세출예산안

□ 기정예산 1조 2,247억 66백만원 대비 405억 7백만원(3.3%)이 증가한 1조 2,652억 73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 내역 〉 3건, 405억 51백만원

-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219억 90백만원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7억 54백만원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08억 7백만원

〈 감액 내역 〉 1건, 45백만원

- 예비비 45백만원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1,265,273	1,224,766	40,507	3.3
진접선(4호선연장)차량 기 지 건 설	121,214	99,224	21,990	22.2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39,442	31,688	7,754	24.5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01,469	90,662	10,807	11.9
예 비 비	98	143	△45	△31.5

3. 교통사업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기정예산 174억 99백만원 대비 87억 15백만원(49.8%)이 증가한 262억 14백만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 내역 〉 1건, 87억 15백만원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87억 15백만원

〈 감액 내역 〉 없음

※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추경예산액(A)	기정예산액(B)	비교증감 (A-B)	증감률 (%)
총 계	26,214	17,499	8,715	49.8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10,315	1,600	8,715	544.7

4.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가. 세입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나. 세출예산안 : 별도 계상내역 없음

Ⅲ.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1. 총괄

- 이번 도시기반시설본부(도시철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2조 19억 78백만원 대비 2,351억 97백만원(11.7%)이 증가한 2조 2,371억 75백만원이며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8,614억 53백만원 대비 2,860억 76백만원(15.4%)이 증가한 2조 1,475억 29백만원임

2. 회계별 검토의견

< 일반회계 >

-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변동이 없음
-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4,862억 1백만원 대비 2,368억 54백만원(48.7%)이 증가한 7,230억 55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전출금 2,368억 54백만원임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

-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8,409억 78백만원 대비 2,351억 97백만원(12.8%)이 증가한 2조 761억 75백만원이며, 주요 변동내역을 살펴보면,

- 기타회계전입금 2,368억 5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218억 6백만원 증액
- 예탁금 원금 및 이자수입 △164억 63백만원, 부담금 △70억원 감액임
-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조 2,247억 66백만원 대비 405억 7백만원(3.3%)이 증가한 1조 2,652억 73백만원이고,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진접선(4호선연장)차량기지 건설 219억 90백만원,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 77억 54백만원,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 108억 7백만원 증액
 - 예비비 45백만원 감액임

< 교통사업비특별회계 >

- 교통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변동이 없음
- 세출예산의 경우 기정예산 174억 99백만원 대비 87억 15백만원 (49.8%)증가한 262억 14백만원이고, 주요 변동내용을 살펴보면,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 87억 15백만원임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모두 변동이 없음

3. 주요 단위사업별 검토의견

■ 진접선(4호선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설명서 p.1651)

- 동 사업은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하여 동북부지역 개발 및 대중교통난 해소와 광역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정예산 992억 24백만원 대비 219억 90백만원¹⁾(22.2%)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 사업은 '21년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사업 추진계획”²⁾에 따라 진접선 연장에 따른 창동 차량기지를 남양주시 진접읍으로 이전 설치하고 국가철도공단과의 협약³⁾에 따라 4호선 운영필수시설을 진접선 경사갱을 활용하여 국가철도공단이 공사하고 서울시가 공사비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예산편성 구성은 크게 진접차량기지 공사관련 예산(시설비, 보상비, 용역비 등)과 국가철도공단 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구분됨

1) 한국전력 수전 시설분납금 66억원, 관급자재비 54억 62백만원

2) 교통정책과-3001호('21.2.17) “4호선 운영필수시설 이전 사업 추진계획”

- 창동차량기지 이전과 4호선 진접 연장(당고개~진접)에 따른 4호선 운영 필수시설 이전 설치가 필요하여 진접선 본선공사를 담당하는 국가철도공단에 위탁 시공 협약체결
- 운영필수시설 : 지하철 안전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수적인 장비유치선, 비상대피선, 자재적치장 등

3) 서울 지하철4호선 운영필수시설 설치공사 위·수탁 협약서, 2021.3.9., 서울시-국가철도공단

- 제13조(사업비의 정산) ①사업비는 “이 공사” 완료 후 6개월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 및 “수탁업무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한다.

- 이번 추경예산 편성안은 진접차량기지 건설에 필요한 공사비와 관급 자재 확보(206억 68백만원)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36백만원) 시행, 국공유지 보상(7억원) 등을 위한 비용으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추경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진접선(4호선 연장) 차량기지 건설사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예산 (2차 추경, A)	기정예산 (1차 추경, B)	'22 본예산	증 감 (C=A-B)	증감율(%) (C/B)
계	121,214	99,224	87,162	21,990	22.2
시 설 비	77,102	55,698	43,636	21,404	38.4
감 리 비	2,548	1,962	1,962	586	29.9
시설부대비	62	62	62	-	-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1,502	41,502	41,502	-	-

- 다만, 지난 3월 1차 추경예산 편성 시 부족한 관급자재비(54억 62백만원)를 추가 편성하였음에도 불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공사비 및 관급자재비 등(214억 4백만원)을 재차 추가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액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본 예산과 추경을 편성하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예산편성안 수립시 계획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무분별한 추경예산안 편성과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신림선 경전철 건설(민자)(사업설명서 p.1657)

- 동 사업은 영등포구 여의도동(샛강역)에서 관악구 신림동[관악산역(서울대)]까지 총연장 7.8km, 정거장 11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경전철 건설사업으로 기정예산 316억 88백만원 대비 77억 54백만원⁴⁾(13.8%)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신림선 경전철(민자) 건설사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39,442	31,688	7,754	24.5
시 설 비	39,242	31,488	7,754	24.6
시설부대비	200	200	-	-

- 동 사업은 BTO 방식⁵⁾의 민간투자사업으로 금년 5월 28일 개통하였으나, 사업추진중 노선 조정⁶⁾으로 추가편입된 국유지 5개 필지⁷⁾에 대한 보상을 위해 54억 2백만원⁸⁾을 확보하고,

지방세법 제9조제2항제2조⁹⁾에 따라 정거장(11개), 검수동 및 중

4) 국유지 추가 확보 보상비 54억 2백만원, 기부채납취득세 23억 52백만원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민간투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1.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이하생략>

※ BTO : Build - Transfer - Operate

6) 당초 신림선 101(샛강역)~102(대방역)정거장 구간은 개나리아파트 하부 통과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아파트 주민들의 피해 최소화 요구를 반영하여 102정거장 위치 변경 및 노선을 조정함

※ 실시계획 변경(3차)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4호, '18.12.6.)

7) 국유지 추가 보상대상 현황

('22년 7월 기준, 단위 : 백만원)

합관제동¹⁰⁾이 취득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실시협약 제59조제5항¹¹⁾에 따라 협약 체결('15.8.12.) 이후 관련 법령 개정('16.1.1.) 등으로 미반영된 취득세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자 부족한 재원 23억 52백만원¹²⁾을 추경안으로 편성하였음

○ 취득세 재원확보와 관련하여 실시협약 제13조제8항¹³⁾에 따르면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¹⁴⁾는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연번	소재지	지 목	소유자	편입면적(㎡)	금 액	비고
계		5필지			11,602	
1	신길동 1376-3	공원	국(기재부)	51.0	540	
2	신길동 1375-1	대지	국(기재부)	304.0	6,700	
3	신길동 1375-2	대지	국(기재부)	77.0	1,400	
4	신길동 505-1	대지	국(기재부)	25.2	24	
5	신길동 4203-1	도로	국(국토부)	251.0	1,900	
6	기 타				1,038	사용료, 감평수수료 등

8) 총보상비 116억 2백만원 중 '22년도 본 예산에 반영된 62억원을 제외한 54억 2백만원을 추경에 반영
9)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시행 2016. 1. 1.] [법률 제13636호, 2015. 12. 29., 일부개정]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국가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귀속등”)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한다.

2. 국가등에 귀속등의 반대급부로 국가등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을 무상으로 양여받거나 기부채납 대상물의 무상사용권을 제공받는 경우

10) 터널, 궤도, 전차선 및 본선설비 등의 토목구조물은 비과세대상(건축물로 보기 어려운 시설은 제외)
11)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59조(사업부지의 제공)

⑤ 사업시행자는 본 협약체결 당시에 자신에게 부여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세공과금 등을 조사하여 총사업비에 반영하여야 하며, 누락된 제세공과금이 추후에 발견되는 경우에 그 제세공과금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당시 제세공과금 관련 법령 등이 없었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2) 취득세 3,663백만원 × 76%(서울시 분담비율) - 기확보예산 432백만원 = 2,352백만원

※ 취득세('07.7.1.불변가) ×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36.2608%) = 2,688백만원 × 1.362608 = 3,663백만원

13)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13조(건설보조금 지급기준)

⑧ 제1항에 의하여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당사자는 <부록12>(건설보조금 지급기준)에 명시된 건설보조금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관청은 위 조정 요청에 의해 양 당사자간 협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와 병행하여 협약 당사자는 운임 조정 또는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조정으로 해당 사유의 해소가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가능하다고 협약당사자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 협의에 의해 운임을 조정하거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총사업비의 변경에 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제12장(분쟁의 해결)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14) 신림선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3조(정의) 108호. 협약당사자 :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요구할 수 있고, 주무관청은 양 당사자간 협의된 건설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중 민간사업비를 제외한 건설보조금은 국가가 24%, 서울시가 76%를 부담¹⁵⁾하도록 하고 있음

증가된 총사업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는 '민자적격성 재조사 없이 국비 추가 지원사례가 없으며, 법령의 재·개정사항으로 인한 증액분은 내부검토가 필요'하는 의견¹⁶⁾을 보임에 따라 서울시는 '22년 5월 국비 확보의 불확실성 및 시간소요 문제가 있어 국가가 부담해야 할 24%(8억 79백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시행자가 민간자본(요금반영)으로 조달하기로 합의¹⁷⁾한 바 있음

- 한편 과거 5차례에 걸친 총사업비 변경(406억 30백만원)¹⁸⁾에 따른 건설보조금 증가분의 재원확보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국비 부분 24%를 민간자본(요금반영)으로 조달하도록 함

15) 경전철 민간투자사업 건설보조금 지원기준 변경통보(기획재정부 민간투자제도과-362호, '09.6.23.)

총사업비 (보상비 제외)	민간사업비	건설보조금			
		계	분담금	국고	지방비
100%	50%이상	50%이내	20%	12%이내	18%

※ 경전철 분담금(총사업비의 20%)이 없는 경우에도 지자체가 경전철 분담금 만큼을 추가 제공하는 경우 민자사업 추진 허용 → 이 경우 국비 12%, 시비 38%로 건설보조금을 100%으로 놓고 볼 때 국비 24%, 시비 76%임

16)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관련 기획재정부 협의 출장 결과 보고(도시철도사업부-22394, '22.5.25.) : '22.5.24. 10시 신림선 총사업비 증가분에 대한 국고보조 추가지원 협의

17) 신림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총사업비 변경(5차)관련 재원조달방안 추진계획(도시철도계획부-21969호, '22.5.25.) :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변경 총사업비의 76%는 건설조보금(시비)으로 부담하고 24%(국비비율)는 민간자본으로 조달(요금반영)하기로 합의

18) 신림선 총사업비 변경 현황(보상비 별도) (단위:억원, '07.7월 기준 불변가)

구 분	당 초	총사업비 변경					비 고
		1차	2차	3차	4차	5차	
총사업비	5,606.6	5,871.7	5,894.3	5,933.3	5,952.3	6,012.6	증 406.3 (+ 7.3%)
비 고	-	증) 265.4	증) 22.6	증) 39.0	증) 19.0	증) 60.3	
(승인날짜)	-	('18.12.20)	('20.9.3)	('21.3.15)	('21.9.3)	('22.5.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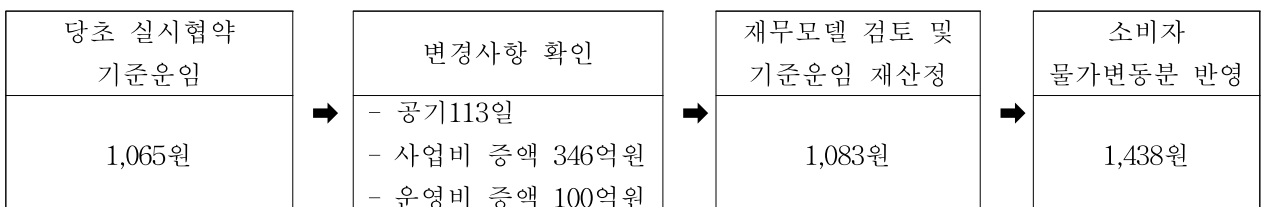
※자료 : 도시철도계획부-21969호

사업시행자는 총사업비 증가분의 일부¹⁹⁾와 공사기간 증가, 운영비 증가, 소비자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최초운임을 1,438원²⁰⁾으로 산정하여 서울시로 신고²¹⁾하였고 서울시는 이를 수리²²⁾하여 신림선이 개통 운영중에 있음

- 도시교통실에서는 신림선 무임손실 및 현재 지하철요금과 신고요금의 운임차액 보전을 위해 37억 84백만원²³⁾을 금번 추경안으로 마련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증가된 총사업비에 대한 건설보조금 지원금 중 미확보된 국비 24%를 서울시가 운임보조를 통해 모두 부담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사료되며,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또한 '22년도 예산편성시 국유지 보상 및 취득세에 대한 예산을 본 예산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었음에도 제2회 추경시 이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며, 향후 경전철 이용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교통실로 시설물 인수인계가 원활히 이행되어야 할 것임

19) 406.3억원 중 4차까지 증가분 346억원을 반영

20) 신림선 경전철 최초운임 신고 수리(도시철도과-21521호, '22.4.28)



21) '21.11.29 : 최초 운임신고(남서울경전철→서울시 도시철도과)

22) 신림선 경전철 최초운임 신고 수리(도시철도과-21521호, '22.4.28)

: 운임신고서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 수리하는 것이 타당

23) 무임손실 보전 26억원, 운임차액 보전 11억 84백만원

■ 동북선 경전철 건설(민자)(사업설명서 p.1662)

- 동 사업은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연결하는 연장 13.4km, 정거장 16개소, 차량기지 1개소의 경전철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906억 62백만원 대비 108억 7백만원(11.9%)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 동북선 경전철(민자) 건설사업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101,469	90,662	10,807	11.9
시 설 비	98,509	87,702	10,807	12.3
감 리 비	2,880	2,880	-	-
시설부대비	80	80	-	-

- 사업비 증액과 관련하여 현재 차량기지 수용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소송²⁴⁾이 진행중임에 따라 소송대비를 위해 30억원, 차량기지 부지 중 수용되지 않은 잔여부지의 가치하락 보상²⁵⁾ 대비 3억원, 노원구 토지 수용재결 등 부족한 보상비 75억 7백만원²⁶⁾ 등 총 108억 7백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

- 건설사업의 특성상 토지보상협의 지연, 소송 등에 따른 보상가액 변

24) 서울행정법원 2021 구단 70557 손실보상금 ; 청구금액 24억 29백만원, 이자 5억 83백만원

25) 세부금액에 대해 감정평가 시행예정

26) 우선 건설보조금을 활용해 '22년에 노원구에서 기집행한 보상비 184억원 중 이월 보상비 72억원, 건설보조금 여유 예산 36억 3백만원을 제외한 부족 보상비 75억 7백만원임

경 등 예측하지 못한 상황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이해되나 '21년 제2회 추경시 토지보상 지연 등으로 150억원을 감액한 바 있음에도 금번 추경에 108억 7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향후에도 보상비 확보²⁷⁾를 위한 비효율적인 추경안 마련이 우려되는 바 공정 및 예산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사업설명서 p.1668)

-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마천역~북정역, 남위례역(지선)을 연결하는 도시철도 사업으로 사업자 선정이 완료²⁸⁾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²⁹⁾'과 '공사입찰설명서³⁰⁾'에 근거한 설계보상비(27억 53백만원) 지급 및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설계비(61억 62백만원) 등의 확보를 위해 기정예산 16억 원 대비 87억 15백만원(544%)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27) 동북선 토지보상 현황

(단위 : 필지)

구 분	계	보상완료 (사용개시 기준)	보상 미완료	비 고
계	405	394	11	-
차량기지(사유지)	2	2	0	추가 보상 및 잔여지 가치하락 등 소송 진행중
본선· 정거장	사유지	64	0	이의제결 등 추가 보상(17억원) 예상
	국공유지	339	11	11필지중 5필지 협의 완료, 잔여 6필지는 '23년 이후 보상(30억원)추진

28) 공사계약서-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일괄입찰)(한신공영(주), 21.12.27.)

29)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기준」 제1장 9절

<일괄입찰의 설계비 보상기준>

- 설계보상비 지급 산식 : 공사예산의 2% × (설계점수/보상대상자 점수 합계)
- 단, 보상대상자 1인에게 공사예산의 1000분의 14 초과 지급 금지

30) 「공사입찰설명서」 16. 기타사항(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공사)

- 낙찰탈락자 중 설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에게 설계보상비 지급

※ 위례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추경안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증감율(%)
계		10,315	1,600	8,715	544%
시 설 비 ³¹⁾	실시설계비	9,915	1,000	6,162	891%
	설계보상비			2,753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³²⁾		400	600	△200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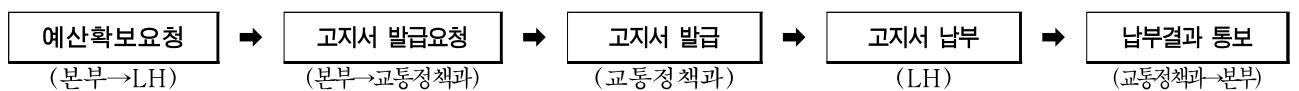
- 동 사업은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트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송파구, SH 및 LH가 체결한 협약서(MOU)³³⁾에 따라 서울시는 트램의 행정절차·설계·건설·운영을 추진하되 소요되는 사업비는 LH 및 SH가 부담하고, 그 비용은 세입절차³⁴⁾를 통해 서울시로 납부되는 구조임
- 또한 협약서 제2조 마항³⁵⁾에 따라 사업비의 부담금액, 부담시기 등 세부사항을 향후 별도의 실시협약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고 현재

31) 시설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 및 공모설계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문화재 발굴경비, 시설의 안전진단 및 정밀점검 경비(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32) 시설부대비: 시설비 또는 도로 및 하천, 항만 등의 대수선비와 재산취득에 직접 소요되는 부대경비, 공사계약 수수료와 공사감독에 따르는 임차료 및 수수료,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경미한 피해에 대한 보상비 또는 복구비(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행정안전부)

33) 협약서-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트램 사업 추진을 위한 국토교통부·서울특별시·경기도·송파구·성남시·한국토지주택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협약서(2019.5.28.)

34) 위례신 도시철도 건설사업 세입절차



35) 업무협약서 제2조(협력사항) 마. LH는 시행 중인 트램 사업계획 채수립 연구용역을 차질 없이 완료한다. 또한 LH·SH는 위례신도시 공동사업시행자로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의한 트램 건설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부담하되 부담금액·부담시기 등 세부사항은 향후 실시협약으로 정한다.

해당 협약체결이 진행³⁶⁾중에 있음

- 동 사업은 교통개선분담금만으로 추진되는 만큼 사업 추진 계획과 교통개선분담금 납부 여부가 사업추진에 있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19년 5월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송파구, SH 및 LH가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 3년이나 지난 현재까지 사업비 부담금액·부담시기 등 세부 사항이 포함된 실시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임

이에 따라 '21년 분담금은 당해연도에 납부되지 않고 '22년 6월 29일 에서야 일부 금액만 납부³⁷⁾되었고 '22년 분담금은 납부하지 않고 있는 등³⁸⁾ 세입 결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속한 협약체결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함

36) 위례선(트램) 업무협약체결 및 후속 추진계획(교통정책과-6560, 2019.4.): 공공주도사업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간 업무협약 체결

37) 위례선(트램) 세입현황(교통개선분담금 계정)

납세자명	과세물건	수납기관	수납일자	수납금액	세목	징수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2022년 위례선 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교통개선분담금	하나은행	2022-06-29	19,411,500,000	교통개선분담금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020년 위례선(트램) 사업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하나은행	2020-09-18	2,000,000,000	교통개선분담금	시
한국토지주택공사	2019년 위례선(트램) 사업관련 교통개선분담금	하나은행	2019-06-19	1,000,000,000	교통개선분담금	시

38) 위례선(트램) 예산집행 현황-세입예산현황('22.7월 기준)

(단위 : 천원)

연도별	LH 납부(예정)액	서울시 예산	
		세입	세출
2019	1,000,000	1,000,000	1,000,000
2020	2,000,000	2,000,000	2,000,000
2021	-	20,500,000	19,494,000
2022	(38,823,000)	38,823,000	1,600,000 (추경 8,715,000)
2023 예정	(68,696,000)	68,696,000	77,710,000

아울러 실시협약이 제때 체결되었다면 '21년도 예정 세입 205억원에 대한 이자 수입도 기대할 수 있었음에 따라 조속한 실시협약 체결이 필요할 것이며 합리적인 사업계획과 공정률을 바탕으로 한 예산편성 및 집행을 통해 위례신도시의 교통편의 제고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임